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3
----------	-----

발의년월일 : 2009년 3월 일
발 의 자 : 김영길 의원외 3명

1. 개정이유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에 대한 사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공사감시관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를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한다.

○ 법령명에 낫표(「 」) 사용(안 제2조)

○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권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당해공사가”를 “당해공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생략) 1.“각종공사” 이라 함은 구청이나 동에서 발주하는 건당공사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인 공사(이하 “관발주공사”라 한다)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이하 “도로 점용공사” 라 한다), <u>건축법</u> 에 의거 협가받 은 민간건축공사를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 ----- ----- 「 <u>건축법</u> 」 ----- -----.
제3조 (공사감독·준공공무원 및 공사감시관임명 (생략 ① (생략) ②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 보호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u>당해공사가</u> 관할하는 동의 동장이 공사감시관이 된다.	제3조 (공사감독·준공공무원 및 공사감시관임명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당해공사</u> 를 -----.
제7조(조치) ①공사감시관이 당해 공사의 감시 과정에서 부실공사 징후가 있거나, 기타 시공 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 공시설물 파손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 당부서의 장에게 시정 · 개선에 관한 <u>의견을</u> <u>제시할</u> 수 있다.	제7조 (조치) ①----- - ----- ----- ----- ----- -----의 <u>견을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u> <u>라도 통보하여야 한다.</u>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8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3. 3
- 나. 제출자 : 김영길 의원외 3명
- 다. 위원회 회부 : 2009. 3. 5
- 라. 위원회 상정 : 2009. 3. 16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길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에 대한 사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공사감시관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띠어쓰기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한다.
- 법령명에 낫표(「 」) 사용(안 제2조)
-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권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안 제7조)

4. 검토보고 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